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40 발의연월일: 2025. 4. 8.

발 의 자:조지연·구자근·장동혁

서명옥 · 엄태영 · 최수진

박준태 · 강선영 · 강대식

이인선 · 최은석 · 김소희

임이자 • 박덕흠 • 김정재

김도읍 • 김장겸 • 고동진

우재준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·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악취,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, 공공하 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 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(안 제63조).

법률 제 호
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이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(국고보조) (생 략)	제63조(국고보조) ① (현행 제목
	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국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
	이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
	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
	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
	<u>다.</u>